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강유정·문정복·김영배

김한규 · 장경태 · 박희승

이재관 • 박 정 • 임오경

이훈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2년 9월 본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

그러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선전물의 특성상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6 6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제4절에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 ①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온라인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로 한정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고 •선전물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확인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66조의3(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여부 재확인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 및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66조의2제3항의 기준에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유해성 여부 확인 결 과가 상이한 경우 직권으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확인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u> 설> 3의2.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 · 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① 제66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온라인비디오물(제50조제 3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신 설>

로 한정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 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 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 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 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등급분류사업자의 청소년 유해 성 여부 확인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여부 재확인 등) ① 영상물등 급위원회는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광 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 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66조의2 제3항의 기준에 위배되거나 자 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유해성 여부 확인 결과가 상이한 경우 직권으로 광고·선전물의 청소 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물등 급위원회는 확인 결과를 자체 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